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
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

1992. 10. 22.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0월 17일
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2년 10월 19일
- 다. 상 정 일 자 : 1992년 10월 21일
<제13회 임시회(폐회중) 제2차 행정재무
위원회 상정>

2. 提案說明의 要旨

- 가. 提案理由
영등포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구민의
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조례내용
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
- 나. 主要骨子
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
때 임대할 경우에만 구의회의 사전승
인을 득함.

3. 專門委員檢討報告要旨(전문위원 : 金熙中)
地方化時代를 맞아 우리區民의 宿願인 區民
會館의 開館을 앞두고 既存 區民會館設置및
運營에 관한 條例를 現實에 맞도록 條例整備
特別委員會에서 改正한 바 있으나 그 중 一
部條文으로 인하여 區民會館의 效率的인 運
營管理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豫想되어 이를
補完하므로써 區民會館 管理運營에 萬全을
기하려는 것이므로 本 改正案은 適切하다고
思料됩니다.

4. 審査結果 : 수정안 가결
(재적위원 11명)

- 출석 11명
- 찬성 11명
- 반대 없음)

5. 修正案 要旨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0월 21일
행정재무위원회위원 양운섭
- 나. 수정이유 : 별첨 수정안 참조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
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修正案

의안 번호	관련 121	제안년월일 : 1992. 10. 21. 제안자 :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
----------	-----------	---

1. 修正理由

개정된 안중에 대여를 삭제하므로 인하여
장기대여시 의회가 구민회관 운영 및 관
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, 이를 보완키 위해
15일이상 대여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.

2. 修正主要骨子

구민회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15일이상
대여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, 의회가 폐
회 또는 휴회중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
얻도록 함.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修正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 대여시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안 제4조 제1항 제2호중 “임대하고자 할 때”를 “임대 또는 15일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”로 한다.
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단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 대여시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 제1항 제2호중 “임대하고자 할 때”를 “임대 또는 15일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修正案對備表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운영및관리)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4조(운영및관리)① --- (단서신설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 ---(삭제)--- 3. (현행과 같음)	제4조(운영및관리)① --- ---단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 대여시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 (개정안과 같음) 2. --- ---또는 15일이상 대여 3. (개정안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개정안과 같음)
2. 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	2. --- ---(삭제)---	2. --- ---또는 15일이상 대여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3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
번호 121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1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 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

1992. 10. 21
도시건설위원회

1. 改正理由

○영등포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구민의 시설
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조례 내용중
일부를 개정하기 위함.

2. 主要骨子

○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
때 임대할 경우에만 구의회의 사전 승
인을 득함.(별첨)

3. 參考事項

○신. 구조문 대비표-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 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제2호중 “또는 대여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9월 18일
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2년 9월 30일 회부
- 다. 상정 일자 : 제13회 영등포구의회
임시회 (폐회중)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
개회(1992년 10월 21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장 韓寬熙)

가. 제안이유

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
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
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
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
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
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
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
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운영및관리) ① (생략)		제4조(운영및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	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	
2. 구민회관의 일부를 임대 또는 대여 하고자 할때		2. ----- (삭 제)		
3. (생략)		3. (현행과 같음)		